



경단기 Review Test	All Care + 심화이론종합반	이름 <input type="text"/>
	출제자 : 김중근T 2017. 09. 18	연락처 <input type="text"/> 맞은 개수 <input type="text"/> / 20

형 법

1. 다음 중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 ②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여러 사람의 눈에 띄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에 규정된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 ②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않고, 또 대상자에 대한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 까지도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행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 ㉣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① ㉠ ② ㉡, ㉢ ③ ㉢, ㉣ ④ ㉣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정형을 비교하여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②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 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수차례의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중간시법의 형이 행위시법의 형이나 재판시법의 형보다 가벼운 때에는 중간시법을 적용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형벌구성요건의 명확성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 법적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제법 뿐 아니라 절차법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 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6.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③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7.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을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8.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을 위임의 근거가 부여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③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가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 재산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9.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신법이 경한 경우에 법률로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시간을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10.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법 제 125조(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나,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 ③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O, X)연결이 올바른 것은?

- (가) 피고인의 광고내용인 화상채팅이 청소년 보호법의 불건전한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 (나)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
- (다)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외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제외된다.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① (가) (O) (나) (O) (다) (X) (라) (X) (마) (O)
- ② (가) (X) (나) (X) (다) (O) (라) (O) (마) (X)
- ③ (가) (X) (나) (O) (다) (X) (라) (X) (마) (O)
- ④ (가) (O) (나) (X) (다) (O) (라) (O) (마) (X)

13.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③ 형의 장·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장·단기 또는 장기가 규정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 ①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해산 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는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다.
- ④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15. 다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진행 중인 공소사료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 (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 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라)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없음 ② (가), (나) ③ (다), (라) ④ (마)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에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②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총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총으로 쏘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1회 격발하여 공소외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총포 등의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 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④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7.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② 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7호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외에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를 금지한다'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 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고,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18. 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c'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 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라고 볼 수 있다.
- ②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란 처음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19.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③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 ①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구 주택법 제91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구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h2 style="margin: 0;">경단기 Review Test</h2> <h3 style="margin: 0;">정답 및 해설</h3>	All Care + 심화이론종합반 형법 출제자 : 김중근T 2017. 09. 18	이름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연락처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맞은 개수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20
---	--	---

형 법

[정답]1. ②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에서 규정한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3. 3. 27. 2002헌바35)

[정답]2. ③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정답]3.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정답]4.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정답]5. ④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6. ③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정답]7. ④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04.09. 선고2014도14191)

[정답]8.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05. 29. 선고 2008도1857)

[정답]9. ③
① (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② (X) 형을 중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중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7.9., 99도1695)
④ (X) 대법원 2008.7.24. 2008어4

[정답]10. ①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아동보호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02.2.28. 99헌가8)

[정답]11. ④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중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중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04.13. 자99조76)

[정답]12. ③
(가) (X)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05.12. 선고2005도6525)
(나) (O) 대법원 2017.1.12. 선고2016도17967
(다) (X)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6.12.15. 선고2016도8070)
(라) (X) 위 규정에서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6.12.27. 선고2016도16676)
(마) (O) 대법원 2011.08.25. 선고2011도7725



[정답]13. ④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09. 17. 선고 97도3349)

[정답]14. ②

대법원 2017.07.21. 선고2013도850 전합

① (X)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06.26. 선고2008도3014)

③ (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3.9. 선고2003도6733)

④ (X)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6.15. 선고2015도5312)

[정답]15. ④

(바) (X)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4.26. 선고2017도3406)

[정답]16. ①

② (X) 설령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받은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대법원 2016.05.24. 선고2015도10254)

③ (X)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6.6.9. 선고2015도19626)

④ (X)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2.7. 선고2016도19084)

[정답]17.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대상이 된다.

[정답]18. ③

① (X)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라고 볼 수 없다.

② (X)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④ (X) 처음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19. ③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정답]20. ①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04.30. 선고2013도15002)